

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 9. 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-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7일

강 남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취지

○ 「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」으로 결정된 기타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삼성동 161-1번지 및 삼성동 161-2번지 앞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: 변경

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- 건축물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-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: 변경

·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·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·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
· 기존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	· 삼성동 161-1 번지 및 161-2번지 앞 차량진출입구 상 버스정류장 등 지장물로 인하여 실제적인 차량진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

-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-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: 변경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

4.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(☎ 3423-611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